

## 새로운 開發投資의 活用 方案

— 本會, 韓國開發投資와 業務協調約定 체결 —

韓國電子工業振興會는 韓國開發投資(株)와 지난 83年 5月 25日字로 業務協調約定을 체결하였다. 本約定을 체결함으로써 振興會 會員社는 約定 체결 兩機關間의 有機的인 協助 체제 아래 經營, 技術指導 및 資金 支援과 電子工業 高度化 支援을 더욱 效率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兩 協調機關間에는 電子工業 開發과 資金 支援에 관한 知識과 情報를 지원함은 물론 會員社를 추천하여 電子工業振興基金과 韓國開發投資株式會社의 投資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공동 노력하겠으며 기타 兩機關의 업무 개발을 위한 事業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전을 기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韓國開發投資(株) (社長 金榮玉)는 82年 12月 21日 開業하여 韓國 최초의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專業會社로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벤처 캐피탈이라는 새로운 金融 영역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開業 이래 先進外國의 벤처 캐피탈 業務 知識과 경험을 거울 삼아 제반 기준과 制度의 整備를 끝내고 현재 활발히 投資業務를 취급중인 韓國開發投資는 研究開發型 企業을 育成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技術開發과 中小企業 振興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벤처 캐피탈이란 급속하게 성장하는 中小企業의 초기 단계 金融으로서 재래식 방법으로는 소요 資本調達이 곤란한 新設 企業 및 中小企業에 대한 資本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定義를 내릴 수 있다.

벤처 캐피탈의 主支援 對象은 소위 벤처 비지니스(Venture Business)라고 할 수 있는데 벤처 비지니스란 단순한 投機的 事業이 아닌 어디



國際金融公社(IFC) 出資協定 調印式에서의 金榮玉 韓國開發投資(株)社長(左)

까지나 企業家 精神을 발휘하여 展開되는 새로운 비지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벤처 비지니스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나 이러한 위험은 도박과는 本質的으로 그 性質을 달리하는, 면밀한 計算된 위험을 말한다.

또한 벤처 비지니스는 「研究開發型 企業」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研究開發型 企業에 대하여 명확한 規定이 없고 政策的인 見地에서 앞으로 規定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日本의 경우를 보면 벤처 비지니스는 資本金이 10億円 이하의 中小企業 내지 中堅 企業으로서 研究開發費를 總賣出額의 50% 이상 지출하는 企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企業은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로 研究開發 단계, 둘째로 企業化 단계, 세째로 成長 단계이다. 研究開發 단계에서는 政府의 지원, 政府 出捐 또는 出資機關의 지원, 企業家의 自己資金 등으로 資金을 충당하고 第2 단계인 企業化 단계에서 벤처 캐피들이 개입하게 된다.

韓國開發投資(株)의 投資를 신청하고자 하는 會員社를 위하여 同社의 규모를 소개하면, 현재의 資本금은 60億원으로서 株主는 世界銀行傘下의 國際金融公社(IFC) 및 國內 7個 短資會社(韓國, 서울, 漢陽, 大韓, 東洋, 中央, 第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아 開發銀行(ADB)은 出資를 위한 協議團을 同社에 파견하여 현재 協議가進行中으로 今年内로는 出資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기타 國内外 機關과도 出資를 위한 협의를 추진중인데 84年 6月 30日까지는 同社의 資本金 규모가 100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同社의 業務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投資對象事業)

1) 研究開發 成果, 發明技術 및 導入技術의 企業化事業에 대한 投資

2) 企業의 新開發 製品을 위한 生產施設의 新設事業에 대한 投資

3) 企業의 經營合理化를 위한 製造工程改善 事業에 대한 投資

4) 既存 施設의 확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投資

5) 流通 構造 改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投資

6) 投資 企業에 대한 相談, 調查, 軉旋 및 事後管理

7) 기타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業務

(投資對象企業)

1) 生活必須品 生產이나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에 따라 國民經濟 발전에 필요한商品을 생산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企業

2) 輸出振興 또는 輸入 對替 効果가 큰 企業

3) 國內資源을 활용하는 企業

4) 雇傭 증대에 기여하는 企業

5) 附加價值가 높은 企業

(投資形態)

1) 出資: 普通株, 優先株의 취득

2) 會社債: 社債, 轉換社債의 引受 등이며 既投資한 企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서 短期運營資金도 일부 공급하고 있다.

投資限度는 投資企業體 資本金의 50% 범위내에서 投資하고 단일 企業體當 6億원 한도 내에서 投資하며 投資에 있어서는 資金用途別, 業種別, 地域別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經濟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同社의 위험부담도 분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同社는 投資 企業體의 經營에는 참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投資 기간은 6年 이내로 하고 있으며, 投資金의 回收時 同社 持分의 賣却相對는 合作投資者에게 우선적으로 賣却할 방침이다.

韓國開發投資(株)는 有關機關과 협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 韓國機械工業振興會,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와 業務協助約定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有關機關과 상호 情報 및 資料 지원, 유망中小企業 공동 지원 등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를 이루하고 있다.

投資相談은 다음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여의도동 27-2 (私學年金會館 1205號)

韓國開發投資(株) 投資審查部(電話: 783-9574/8)

### 業務協調約定

제 1 조(목적) 이 약정은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전자부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력 제고와 합리적 경영능력 배양이 국가 산업발전에 절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감안, 전자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기술개발투자 여건 조성과 연구개발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에 보다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여 전자부품의 유망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발굴, 지도, 육성을 촉진코자 공동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개발 및 자금지원) 「갑」과 「을」은 전자

부문의 기술알선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협력한다.

1. 「갑」은 「을」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적극 소개하며, 「을」로 하여금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전자부문 중소기업자가 자금상의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을」은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정에서 필요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적극 소개함으로써 전자공업부문의 중소기업자가 경영, 기술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갑」과 「을」은 각각 지원업체에 대한 성실한 정보를 상호 적극 교환한다.
  4.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가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전자공업진흥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배려한다.
  5. 「을」은 「갑」이 추천한 전자부문의 유망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설립, 제품의 다양화, 제조공정의 개선, 시설의 확장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도록 배려한다.

3 조(전자공업 고도화지원) 「을」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며, 「갑」으로부터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한 고도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함으로써 전자공업 고도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제 4 조(조사) 「갑」과 「을」은 전자공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활동에 협조하며, 조사결과를 상호 교환하여 업무증진에 노력한다.

제 5 조 (정보, 자료의 교환, ① 「갑」과 「을」은 간 행물을 상호 무료로 교환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내부자료를 열람하거나 도서자료를 상호 대여할 수 있다.

제 6 조(공동사업) 「갑」과 「을」은 다음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세미나, 워크샵, 회의, 연수 등
  2. 해외출장(조사)
  3. 호혜적 과제의 연구
  4. 상대기관에 추천, 권고한 사업
  5. 기타 관련 부대사업

제 7 조 (비용부담) 업무협조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은 그 실비를 의뢰기�이 부담하다

제 8 조 (실무협의회) 이 약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록

1. 이 약정은 「갑」과 「을」의 대표자의 서명일로 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이 약정은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983년 5월 2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  
회장 강진구              사장 김영우

